

FTA BRIEF

EU 원산지규정의 디지털 전환과 검증 강화
: 2026년 특혜·비특혜 원산지 절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Vol. 06-2
AUGUST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2026
8월호

미국 동향	주요국 동향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조사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예정 • 무인항공기 시스템(UAS)-부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정	 관세·환경규제 이행체계 정비 • 전자 원산지 증명서 수용 및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증명 강화 등 비북에 원산지 관련 절차 정비 • PPWR 주요 이행기준 구체화 및 CBAM 이행 가이드 문서 신규 발표
 관세법 제338조 관세 부과 •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등 조치에 대응해 554개 세번의 캐나다 물품에 50% 관세 부과	 미국의 기술·감제노동 관련 규제로 맞대응 • 대미 드론 수출통제 강화, 수입 사무기기 국가안보 조사 등 비관세 대응조치 도입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잘못된 반덤핑 사건번호 신고에 따른 반덤핑관세 회피 결정 사례 • 백악관, 중국 등 고관세 국가 물품의 불법 환적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목재 캐비닛·세면대 캐비닛에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부과 • 7월 31일부터 최대 200일간 25%의 추가관세 부과

※ 사진 출처 :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정보 제공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정책, 통상집행, 환경규제 등 2026년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다.
 - 해당 정보는 미국의 관세정책 및 통상집행 동향과 주요국의 관세·환경규제 등 최신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 ☒ 이번 8월 호에서는 미국의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에 대한 최대 100%의 제232조 관세 도입, 반덤핑 사건번호 오신고에 따른 관세회피 판정 및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 동향 등을 주요 사례로 다루었다.
- ☒ 앞으로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주요국의 관세·원산지 및 통상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U 원산지규정의 디지털 전환과 검증 강화

: 2026년 특혜·비특혜 원산지 절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글_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장]



1. 들어가며



2025년 4월, 미국이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통상환경은 국가별 관세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가 관세부담을 좌우하는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어떤 물품이 어느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되는지는 더 이상 수출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FTA 특혜관세뿐 아니라 국가별 차등관세, 무역구제조치 등 다양한 관세조치의 적용 여부와 수준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원산지 판정이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관세법(UCC)의 시행규정인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이하 UCC-IA)의 원산지 관련 절차를 잇달아 개정했다. 6월 2일 채택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3은 특혜원산지 관련 절차를, 6월 25일 채택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422는 비특혜원산지 증명 관련 절차를 개정하였다. 두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UCC-IA의 절차규정을 개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EU가 원산지 정보를 생성·전달·증명·검증하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두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산지 관련 절차의 개정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EU 관세행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EU 원산지규정 체계 이해 및 개정의 배경



1) EU 원산지규정의 두 갈래: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EU 원산지규정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계로 구분된다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로,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나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은 특혜무역제도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산지 규정이다. 한-EU FTA에 따라 한국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작성하는 원산지 신고서가 바로 이 체계에 속한다.

비특혜원산지는 특정 특혜협정에 따른 관세혜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다. 비특혜원산지는 일반적인 최혜국(MFN) 관세율 적용을 비롯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일부 관세 할당 및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무역·관세 조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두 체계는 판정 기준도, 증명 방식도, 활용 목적도 다르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EU가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각각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혜원산지 영역에서는 절차의 표준화·디지털화와 함께 공급망 원산지 정보의 검증체계를 정비하고, 비특혜원산지 영역에서는 전자적 증명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관세혜택의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운송경로 증빙요건을 마련하였다.

2) 특혜원산지규정 개정의 배경 — 관세동맹 개혁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

EU의 특혜원산지 증명체계는 하나의 통일된 원산지증명서만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혜협정의 내용에 따라 관할 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원산지 신고 등 여러 방식이 병존하는 구조이다. 정부 발급 방식에서는 일부 특혜협정에서 사용되는 EUR.1과 같은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는 반면, 자율증명 방식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를 작성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뒷받침한다. 이때 등록수출자(Registered Exporter, REX)는 EU의 GSP 등 일부 특혜무역제도에서 등록을 통해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수출자를 말한다. 반면 한-EU FTA처럼 협정에서 인증수출자(Assured Exporter)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과 국내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를 작성한다.

한편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상의 원재료·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급자 선언서(Supplier's Declaration)이다. 공급자 선언서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최종적인 원산지 증명이라기 보다는 수출자가 자신의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확보하는 원산지 정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EU의 특혜원산지 증명은 크게 공급자가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자가 이를 바탕으로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며, 수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특혜원산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개별 특혜협정 또는 EU의 이행규정에 존재하며, 특혜 원산지의 증명 방식 역시 협정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¹⁾

1)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rules-origin-goods/preferential-rules-origin/proof-origin_en

이처럼 특혜원산지 증명은 단순히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급망에서 생성되는 원산지 정보와 수출자의 증명, 수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세관의 검증이 연결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다. 따라서 특혜무역의 확대와 공급망의 복잡화가 진행될수록 원산지 증명에 사용되는 정보의 형식과 전달방식,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 등의 관리, 세관 간 검증절차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진다. Regulation (EU) 2026/1183의 개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특혜원산지 관련 절차적 규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사용되는 정보를 보다 표준화·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재편의 배경에는 EU가 지속해 온 관세행정의 디지털화라는 보다 큰 정책적 흐름도 작용하고 있다. EU는 EU 관세법(UCC, Regulation (EU) No 952/2013 제6조)상 '정보·데이터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통관 절차의 전산화를 추진해 왔으며, 특혜 원산지 분야에서도 전자적 처리 체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 위원회는 개정된 PEM 원산지 규정(Transitional/Revised PEM Rules of Origin) 운영 에서도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공표²⁾ 하였으며, 원산지 증명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결국 2026/1183은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원산지 규정의 변경 이라기보다, 다양한 특혜무역 제도에서 운용되어 온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를 EU 관세행정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표준화라는 방향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공급자 선언서, 등록수출자 관리, 원산지 증명의 발행·검증 등 기존에 여러 규정과 절차에 분산되어 있던 요소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원산지 판정기준의 변경”보다는 “원산지 정보를 생성·전달·증명·검증하는 절차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DECISION No 1/2024 OF THE JOINT COMMITTEE OF THE REGIONAL CONVENTION ON PAN-EURO-MEDITERRANEA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2024,12)

3)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배경 — 터베리 합의와 대미 관세 협상의 이행

반면 Regulation (EU) 2026/1422, 특히 신설된 제59a조는 2026년 EU-미국 관세조정 조치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 2025년 4월 미국의 대규모 관세조치 이후 EU와 미국은 협상을 이어갔으며, 2025년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터베리에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양측은 8월 21일 공동성명(EU-US Joint Statement)을 통해 관세 관련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합의는 미국 측의 對 EU 관세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수산물·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EU는 공동성명의 관세 관련 내용을 EU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6년 5월 20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잠정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Regulation (EU) 2026/145³⁾가 채택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EU와 미국 사이에는 현재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26/1455는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일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0%로 조정하거나 관세 할당을 통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관세상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의 적용을 위해 별도의 FTA 특혜원산지 규칙을 도입한 것은 아니며, 같은 규정 제6조는 원산지를 EU의 비특혜원산지 규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산 물품에 관세상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제3국 물품이 미국을 경유하거나 복잡한 운송경로를 거쳐 해당 혜택을 부적정하게 적용받으려는 우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6/1422가 신설한 제59a조는 이러한 우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26/1455의 관세상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증명에 직접운송 또는 제3국 경유 시 세관감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Regulation (EU) 2026/1455는 미국산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및 관세할당(TRQ) 개방을 목적으로 2026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EU의 통상 이행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고 특정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양자 간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합의 전까지 기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과적 특징을 가진다.

3. 특혜원산지 규정 재편과 주요내용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3



2026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3」을 채택하고 다음날 관보에 게재했다. 발효일은 2026년 6월 23일이지만, 본문 적용은 2027년 12월 23일부터 개시된다. 특히 공급자 선언서 관련 규정과 부속서 22-15의 개정 등 일부 핵심규정은 기업과 회원국 세관의 시스템 정비를 고려하여 2028년 6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특히 공급자 선언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약 2년간 유예함으로써 회원국 세관과 경제운영자가 새로운 절차와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한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개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직접 변경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대신 특혜원산지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그 원산지 정보를 공급망 내에서 전달하며, 세관이 이를 검증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전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개정규정의 전문도 기존 특혜원산지 관련 절차 규정을 새로운 하위 구조로 재편하고, REX 시스템, 특혜협정의 절차적 선택사항, 공급자 선언서 및 전자적 원산지증명 체계의 구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개정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은 기존 UCC-IA의 특혜원산지 관련 절차 규정을 기능별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특혜협정 절차, REX 등록·관리, 공급자 선언, 원산지 증명의 검증 및 전자적 처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규정에 흩어져 있던 절차 규정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과 부속서를 삭제·대체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첫째, 정의 규정의 정비이다. 개정된 제60조는 'document on origin', 'preferential agreement', 'supplier', 'customer'⁴⁾, 'originating status'를 정의하였다. 특히 'supplier'와 'customer'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급자 선언이 공급망 내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document on origin'을 특혜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관할당국 또는 수출자 등이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공급자와 고객 및 공급자 선언서에서 사용되는 'originating status'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후 공급자 선언서와 원산지증명 절차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규율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일반적인 소비자나 구매자가 아니라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어 supplier's declaration을 받는 자를 의미

둘째, REX(등록수출자) 시스템의 관리체계 정비이다. 개정규정은 EU 및 관련 특혜무역 제도에서 운용되는 등록수출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이들의 등록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위험분석에 기초한 방법과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다.⁵⁾ 또한 등록수출자는 등록정보의 변경을 즉시 통지하고, 원산지 신고의 정확성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세관의 확인·검증 등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REX 등록은 일회적인 등록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수관리와 검증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정비되었다.

셋째,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디지털화를 위한 EU e-PoCC(Electronic Proof of Origin) 시스템의 구축이다.⁶⁾ 개정된 Article 126a는 EU e-PoC를 특혜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서류의 발급·제출, 검증요청, 회원국 간 행정협력 및 진위·유효성 확인 등에 활용되는 중앙 전자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EU 관세 싱글윈도우인 CSW-CERTEX와의 연계를 통해 원산지증명 관련 정보를 세관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e-PoC는 규정 발효와 동시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를 들어 PEM 협약에 따른 EUR.1 신청·발급 및 EU 내 원산지 증명 검증을 위한 e-PoC 사용은 2030년 6월부터 시작되며, e-PoC와 회원국 세관 시스템 간 자동 정보교환은 2033년 6월부터 예정되어 있다.⁷⁾

넷째, 공급자 선언서 검증의 회원국 간 행정협력 정비이다. 고객이 소재한 회원국의 세관은 공급자가 소재한 회원국의 세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세관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회신이 없거나 회신 내용만으로 공급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급자 선언서를 관련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⁸⁾ 이는 공급자 선언서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지, 그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자동으로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검증결과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공급자 선언서에 의존하여 원산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결국 원산지 증명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관이 원산지 정보를 더 쉽게 연결·검증할 수 있게 하는 양면적 변화로 풀이할 수 있다.

5) Article 82a

6) e-PoC(Electronic Proof of Origin)는 EU가 특혜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중앙 시스템이다. 2026년 6월 채택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3은 UCC 시행규정(Regulation (EU) 2015/2447)에 제126a조를 신설하여 e-PoC의 법적 근거와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다. e-PoC는 원산지 증명서류의 발급·제출·검증, 회원국 세관 간 정보교환 및 진위·유효성 확인 등을 지원하며, 2030년부터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전면 운영이 완료된 시스템이라기보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구축·도입이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7) Article 126b

8) Article 66

4. 비특혜원산지 규정 재편과 주요내용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422」는 2026년 6월 25일 채택되어 6월 30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특히 제59a조를 신설하여, 미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및 관세할당을 규정한 Regulation (EU) 2026/1455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운송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2026/1422의 개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 제57조부터 제59조 및 부속서 22-14를 개정하여 특정 비특혜원산지 증명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59a조를 신설하여 2026/1455에 따른 미국산 물품의 관세상 혜택 적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원산지·운송 증빙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2026/1422는 농업 분야의 비관세 절차에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인 ELAN(Electronic System for Agricultural Non-Customs Formalities)을 활용하여,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교환 등 관련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ELAN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EU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원산지 증명은 그 기능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는 2015/2447의 제57조부터 제59조 및 부속서 22-14를 개정하여, 기존의 비특혜원산지 증명 절차에 전자적 발급·교환 방식을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자화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증명방식을 일률적으로 전자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규정에서 정한 특정 원산지 증명 및 관련 행정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한 제59a조는 Regulation (EU) 2026/1455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적용받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와 운송경로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의 경우 세관감독 여부와 물품의 상태에 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관세상 혜택의 부적정한 적용 가능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Regulation (EU) 2026/1455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에 그치지 않고 운송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에서 EU 관세 영토로 직접 운송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운송 경로가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세관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제3국에서 물품이 보관·분할된 경우 물품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변경이나 표시·라벨·봉인·서류의 부착 등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물품에 다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59a조가 미국산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산 여부는 2026/1455 제6조에 따라 EU의 비특혜원산지 규칙에 의해 결정되며, 제59a조는 해당 원산지를 전제로 2026/1455의 관세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운송 및 원산지 증빙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Regulation (EU) 2026/1183 및 2026/1422 주요내용 비교

구분	2026/1183	2026/1422
대상	특혜원산지	비특혜원산지
주요 목적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의 체계화 및 디지털화	비특혜원산지 증명절차의 전자화 및 특정 관세혜택의 적정 적용을 위한 증빙강화
주요 제도	REX, 공급자 선언서, 원산지 증명·검증, 회원국 간 행정협력	전자 원산지증명서, 제59a조의 직접운송·비가공 증명(미국산 물품관련)
검증·통제	REX 위험기반 모니터링 및 공급자 선언서 검증절차 정비	미국산 물품의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또는 비가공 증명
디지털 연계	e-PoC-EU CSW-CERTEX 연계	ELAN을 통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활용
적용 시기	2026.6.23. 발효 후 기능별 단계적 적용	2026.7.1.부터 적용
정책적 의미	원산지 정보의 데이터화·표준화 및 검증체계 고도화	비특혜원산지 증명의 전자화와 관세혜택의 부적정 적용 방지
* 두 규정 모두 원산지 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6/1183은 특혜원산지의 증명·검증 체계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2026/1422는 비특혜원산지 증명 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미국산 물품의 특정 관세혜택에 대한 운송·비변경 증빙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5. 시사점 및 대응 과제



이번 EU 관세법 시행규정(UCC-IA) 개정(Regulation (EU) 2026/1183 및 Regulation (EU) 2026/1422)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원산지 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관리하고 전자적으로 교환·검증하는 방향으로 EU의 원산지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혜원산지 영역에서는 e-PoC 체계 구축 및 EU 관세 싱글 윈도우(EU CSW-CERTEX)와의 연계를 통해 원산지 정보의 표준화와 전자적 검증 기반을 마련한 반면, 비특혜원산지 영역에서는 제59a조를 신설하여 2026/1455에 따른 미국산 물품의 관세상 혜택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수입 위험에 대응하고, 제3국 경유 여부 및 물품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요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관세상 혜택의 적정한 적용을 위한 통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개정 흐름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상 혜택의 적절한 적용과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회수입 등 부적정한 관세 혜택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대미 관세 조정 및 관세할당을 규정한 Regulation (EU) 2026/1455의 시행과 맞물려 신설된 제59a조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상 혜택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증빙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등록수출자(REX)에 대한 위험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회원국 세관 간 공급자 선언서 검증에 120일의 회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검증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언서를 원산지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급자 선언서에 대한 사후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REX 관리가 단순한 등록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분석에 기반한 사후 모니터링과 연결되도록 정비되었다는 점은, EU가 원산지 증명 주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검증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행정 재편은 한-EU FTA를 활용하거나 역내·외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한국 기업·기업에도 원산지 증빙 및 공급망 정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e-PoC 구축 및 EU CSW-CERTEX와의 연계 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전자 원산지증명 데이터의 국제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고 향후 EU와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기술적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자율증명 및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EU의 공급자 선언 검증 및 위험기반 관리 강화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증빙 및 공급망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 실무에서는 향후 변경되는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와 이에 따른 증빙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의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 역내 공급자로부터 공급자 선언서를 제공받아 특혜원산지를 입증하는 기업은 공급자 선언서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산지 자료와 거래·생산 관련 증빙을 평소부터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 세관 간 검증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120일의 회신기한이 적용되며,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검증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자 선언서가 원산지 판단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6/1455의 관세상 혜택을 적용받는 미국산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운송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세관감독 하에 있었고 물품의 상태에 허용되지 않은 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운송서류, 세관 또는 보세구역 관련 기록 등 실제 운송경로와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 단계별로 관리함으로써 원산지 및 운송 관련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증빙요건은 모든 EU 수출입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6/1455가 적용되는 미국산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공공누리



출처 표



산업용금지



변경지

공공저작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773022 798002

03

ISSN 3022-7984